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 사용 지침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 사용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창원시와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가 위. 수탁 체결한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북면 장애인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43-1번지 (9,930m²,18홀) 일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말한다.

제3조(대여료 및 비용부담) 파크골프장의 대여료는 창원시와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의 계약에 의거하여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크골프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소모품, 청소비용, 파크골프장 시설 파손 등)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장애인, 창원시장장애인골프협회,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 시민이 부담한다.

제4조(사용자격) 파크골프장의 사용대상은 장애인 또는 창원시장장애인골프협회에 소속된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 창원시민 등으로서 제6조의 사용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파크골프장 개방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이며, 동계 시즌(11월~02월)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경기 및 연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 및 단체별 사용시간은 파크골프장 개방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6조(사용 신청방법) 파크골프장 사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 시민은 사용을 희망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또는 창원시장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로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창원시장장애인골프협회에 신청하는 경우 창원시장장애인골프협회는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선 사용 순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파크골프장의 이용은 아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 및 업체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 및 판매행위

2. 종교단체의 의식 행사,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
3. 파크골프장에서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체육활동을 포함한 행사
4. 소음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파크골프장 내 시설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거나,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6. 취사·야영행위를 포함하는 행사
7. 공익성 및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8. 그 외 본회가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8조(준수사항) 파크골프장 사용승인을 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 시민 등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사를 위한 천막, 앰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관련 주최자 보험 가입 등의 행위를 선행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행사 후 파크골프장 시설물 및 파크골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행사 관련 쓰레기는 사용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취소) 파크골프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 시민 등이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을 취소 받은 시민 또는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개인 또는 단체
2. 파크골프장 사용 시 불미스런 행위(다툼,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를 한 개인 또는 단체
3. 그 외 제8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기타사항)

1. 창원시장장애인골프협회,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 등에서 생활체육 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회 요강 등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대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창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대회 참가 자격은 창원시에 주사무소를 둔 파크골프 동호회만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파크골프장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파크골프장 사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3월2일부터 시행한다.